

(나) 청구인은 2005. 2. 25. 성균관대학교의 1996. 3. 1.자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미 1996. 4. 23. 각하 판단을 받았고, 소청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5. 4. 2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비록 사립학교와 그 교원 사이의 관계는 국·공립학교와 그 교원의 관계와 달리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이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국·공립학교 및 그 교원이나 사립학교 및 그 교원 모두가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국가가 국·공립학교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균형 있게 감독을 하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해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행정심판에 유사한 구제절차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은 국가의 감독대상자인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감독권 행사로서의 처분이며 행정심판의 재결에 유사한 것인 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과 다른 불복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

정소송을 통하여 그 제기기간내에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 7. 29.

본 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은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